

복리후생지침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2011.12.29

현 행	개 정	비 고
제5조(지원제한) ① ~③ <생략> ④ <u>직원이 휴직(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된 자 제외)을 한 때에는</u> 계산하지 아니한다.	제5조(지원제한) ① ~③ <생략> ④ <u>직원이 창업을 위한 휴직 후 1년을 초과한 때 또는 재적전출을 한 때에는</u> 계산하지 아니한다.	조문 현행화
제11조(개인연금 지원) ① <u>회사에서</u> 지원한다. ② <u>개인연금</u> 따로 정한다. ③ <u>연금저축</u> 따로 정한다.	제11조(연금저축 지원) ① ~③ <삭제> ① <u>회사는 직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을 지원한다.</u> ② <u>연금저축 지원대상,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	제도개선 반영
	제17조(의료비) ① <u>사원 및 그 가족의 가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</u> ② <u>의료비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(청원경찰 포함) 및 사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배우자와 자녀(만20세 이하)로 한다.</u> ③ <u>타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지원을 제한한다</u> ④ <u>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통한 지원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, 의료비 지원대상,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/u>	제도개선 반영

현행	개정	비고
	<p>제18조(상호부조제도)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일정한 금전을 정기적으로 거출하여 적립 후 임직원의 애경사 발생시 부조하는 제도(이하 '상호부조제도')를 운영하기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이 거출한 금액에 상응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상호부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사는 임직원 거출금에 대한 급여공제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상호부조제도의 재원조성, 운영 및 결산 보고를 위하여 상호부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④ 상호부조제도의 운영방법,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</p>	상호부조제도 신설
	<p>제19조(선택적복지제도) ① 사원은 개인별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2장 및 제11조,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직원자녀학자금지원, 연금저축, 의료비, 건강검진, 단체보험, 상조지원은 해당 항목을 선택적복지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한다.</p> <p>③ 선택적복지제도의 구성항목은 공통, 필수, 추가항목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선택적복지제도의 구성항목별 선택적 복지포인트(이하 '복지포인트'라 한다.) 부여기준은 '별표1'에 의한다.</p>	조문 신설 (선택적복지 후생제도)

현 행	개 정	비 고
	<p>⑤ <u>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통해 부여하되, 중고자녀 학자금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<u>복지포인트 1포인트는 통화기준으로 환산시 1원으로 한다.</u></p> <p>⑦ <u>복지포인트의 사용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. 다만, 퇴직시에는 퇴직일의 익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<u>복지포인트는 해당 항목의 부여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⑨ <u>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	<p>조문 신설 (선택적부리 후생제도)</p>
	<p>부칙(2011.12.29.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.1.1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(주)케이티프리텔에서 전환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2장에도 불구하고 (주)케이티프리텔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한 중고학자금 지원수준을 유지한다.</p> <p>제 3 조(제도폐지)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하계휴가보조비와 기념품비는 폐지한다.</p>	

별표

현행	개정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(별표1)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기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만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9 379 1850 100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항목</th> <th>부여 Point</th> <th>부여기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통</td> <td>기본</td> <td>160</td> <td>- 전사원 균등 배분</td> <td>복지기금 교육훈련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필수</td> <td>I</td> <td>건강검진</td> <td>-</td> <td>-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※ 15만~45만p</td> <td>복리후생비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II</td> <td>의료비</td> <td>24</td> <td rowspan="3">- 실손의료비/단체보험 : 재원 합/사원수 - 연금저축/상조회비 : 가입한 사원에 부여</td> <td rowspan="3">복리후생비</td> </tr> <tr> <td>단체보험</td> <td>14</td> </tr> <tr> <td>연금저축 상조회비</td> <td>60 15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추가</td> <td>I</td> <td>교육비</td> <td>-</td> <td>-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※ 종전 kt, ktf 기준 유지</td> <td>복지기금 복리후생비</td> </tr> <tr> <td>II</td> <td>인재육성</td> <td>30</td> <td>-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</td> <td>복지기금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항목	부여 Point	부여기준	비고	공통	기본	160	- 전사원 균등 배분	복지기금 교육훈련비	필수	I	건강검진	-	-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※ 15만~45만p	복리후생비	II	의료비	24	- 실손의료비/단체보험 : 재원 합/사원수 - 연금저축/상조회비 : 가입한 사원에 부여	복리후생비	단체보험	14	연금저축 상조회비	60 15	추가	I	교육비	-	-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※ 종전 kt, ktf 기준 유지	복지기금 복리후생비	II	인재육성	30	-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	복지기금	<p>선택적복리후생제도 기준</p>
구분	항목	부여 Point	부여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	기본	160	- 전사원 균등 배분	복지기금 교육훈련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필수	I	건강검진	-	- 연령에 따라 부여기준 차등 적용 ※ 15만~45만p	복리후생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II	의료비	24	- 실손의료비/단체보험 : 재원 합/사원수 - 연금저축/상조회비 : 가입한 사원에 부여	복리후생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단체보험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연금저축 상조회비	60 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가	I	교육비	-	-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녀를 가진 사원 ※ 종전 kt, ktf 기준 유지	복지기금 복리후생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II	인재육성	30	- 입사 10년차 이내이면서 만40세 미만인 사원	복지기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